

2022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장 강민철 사무관 조희운	044-201-1791 044-201-172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	부장 이병식	02-3771-6830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팀장 이해운	02-3786-7631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14,710	427,740	624,094	737,598	971,256
보조	232,836	241,740	352,749	407,778	533,169
순보험료 지원	181,874	186,000	271,345	329,820	438,087
운영비 지원	50,962	55,740	81,404	77,958	95,082
자부담	181,874	186,000	271,345	329,820	438,087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4. 사업관리 및 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II.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2. 세부 사업내용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관련

보험대상 농작물 : 총 67개 품목

구 분	품 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뽕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썩갓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 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2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 별표3

보험 판매기간 : 별표4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이라도 판매를 중단 할 수 있음

□ 보험가입단위

- 벼 : 동일 읍·면·동 내 동일 가입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농지 단위로 가입 가능
 - * 1인 1증권 계약 체결 원칙이나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동일 계약자가 추진사무소를 달리하여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별도 협의한 예외 사항의 경우 한 계약자가 2증권으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 벼섯재배사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농업용 시설작물, 벼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 단, 시설작물은 시설물 가입시에만 가입이 가능(유리온실 제외)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그 외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 각각 시(특·광역시 등 포함)·군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품목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해 시·군 단위보다 세분화된 읍·면별 요율을 시범적용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벼섯재배사·벼섯작물, 비가림시설(참다래·포도·대추)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벼 품목은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
- 품목별 시·군별 보험요율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 보험료 할인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80% 미만시 누적손해율·가입기간에 따른 할인 적용, 일부 품목 대상 방재시설 설치시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할인 적용
 - 보험료 할증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120% 이상시 누적손해율·가입기간에 따른 할증 적용

□ 재해보험 가입절차(별표5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농업인에게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지역 대리점)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보험 목적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지역 대리점)

(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음

□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3. 정부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 * 제①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손해조사비) 지원 : 50% 단,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5 ~ 60% 차등 보조
 -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가입 진행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6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참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배·단감·사과·뽕은감	60	60	50	38	35
	벼	60	55	50	46	44

* 사과·배·단감·뽕은감은 '23년까지, 벼는 '25년까지 국고보조율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최저 33%)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운영비 지원 : 100%

4.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별표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법 제8조)
 - 약정내용(약정기간, 사업시행기관 준수사항, 재정지원, 사업점검, 자료제출,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기준, 보험사업자수수료 지원한도 등)
 - 사업약정체결 이후 약정기간 내에 내용 변경 시, 재약정체결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며 상품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상·하반기 판매품목별 상품개선안 마련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제출시기 : 판매개시 6개월 전(상반기 7월말, 하반기 1월말)

-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운용상 변경내용 발생 시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 발굴
- 판매 시기별 상품개선 절차 및 일정 수립·시행·관리
-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한 상품개선안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연구기관 등) 및 현장전문가(품목전문가, 재배자 등)의 자문을 거쳐 상품개선안 확정, 보험사업자에 통보
- 보험료율 산출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승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마련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 * 코로나 상황 악화 등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3. 사업시행 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10일까지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요구시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 보험사고 접수현황, 피해규모 및 손해평가 가용인력 등 파악

- 태풍, 장마 등 주요 재해 발생시 손해평가 진행 현황 및 추정 보험금 추산 보고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품목별 가입시기를 지자체에 제공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등 설명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총국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지역총국 → 지역농협 → 농업인으로 설명 전파)
 - 품목별 주산지 지역농협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위 대상이 아닌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내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 단, 현장설명회가 어려울 경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실시
- 품목별·시기별 가입 동향 및 가입률 분석 및 추정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른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신청 계획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교부신청 계획의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교부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신청 계획 승인
-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보험사업자의 교부신청 계획 승인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 교부신청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정산》

재해보험사업자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 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점검결과 보고(별표7)’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농협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에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 ~ 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위법 사실은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재해보험사업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사업지역 확대,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주요 성과지표 : 사업지역 확대,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지역,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고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 평가 확인
- 성과지표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대상 품목의 가입면적/대상면적)

《만족도 조사》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 원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지역, 대상품목 및 품종,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시기 :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품목(품종)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재해보험사업자

라.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보장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운영 실적, 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과, 호박, 당근, 팔,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 ²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 ²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별표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구분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 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	○	○	○	○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특정 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	○	○	○	○	○
종합 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	○	○	○
	감귤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1.30일 이전) (특약)동상해(12.1일 이후)	○	○	○	○	○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 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	○	○	○	○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팥, 보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호두 (특약) 조수해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3% 또는 5%				

구분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종합 위험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시설물 (특약) 제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 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 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과,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잠), 버섯작물(표고버 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 용하지 않음				

-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 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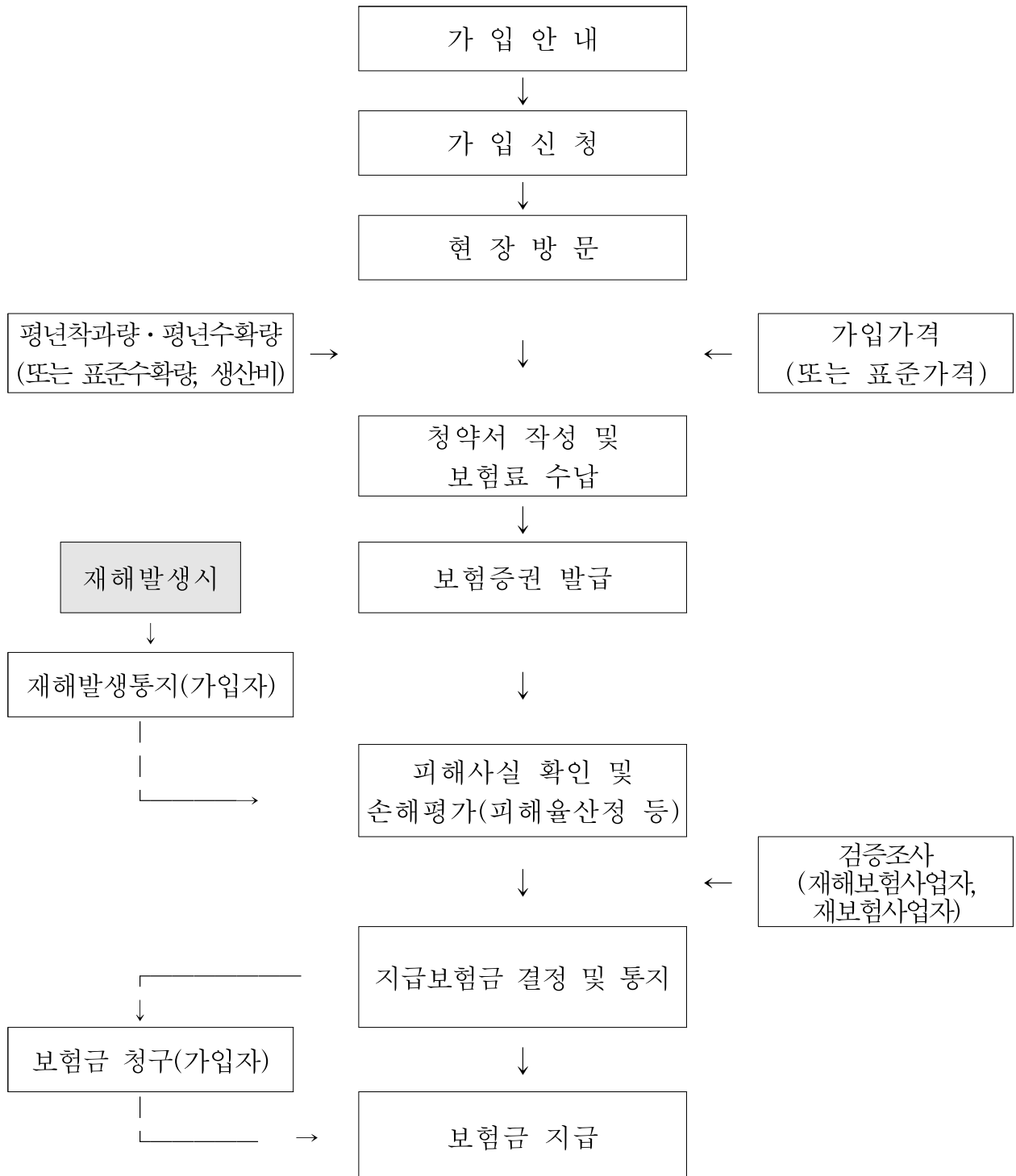
보험 판매기간

구 분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뽕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2월~11월
밤·대추·감귤·고추·호두	4월~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월~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8월~9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9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사료용) 벼	4월~6월
참다래·콩·팥	6월~7월
인삼	4월~5월 10~11월
당근	7월~8월
양배추·메밀	8월~9월
브로콜리	8월~10월
마늘	(난지형 남도종) 9~10월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차·양파·시금치	10월~11월
밀·보리	10월~12월
포도·유자·자두·매실·복숭아·오디·복분자·오미자·무화과·살구	11월~12월

-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별표 5>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별표 6>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 5개 부분 총 56개 항목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별표 7>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점검결과 보고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발신자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품목의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 검증 조사,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평가기관	평가반원	조사일시	조사종류	재해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 관련자료 첨부(계약내용, 손해평가 내용 등)

<별표 8>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을 확인하여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 (지원금 청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재해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 (예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가입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자체에 신속히 알리고 지자체는 추후 예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 중단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